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26 호 2020. 4. 2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59호[하천 점용 허가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61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사항 고시]..... 2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59호

하천 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신 명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이정*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찬*1길 39-3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설치(배수관로 설치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대안동 36-10번지 일원

나. 면적 : 일시 9m², 영구 7m²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 : 착공일로부터 1일간

영구 : ~ 2024. 12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-61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협의 년월일	협의 번호	협이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협의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성 명	주 소					
'20.03.31.	제2020-1호	울산광역시 복구청장	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복구 당시동 250-2	1	2020.03.31. ~ 2050.03.30.	재난방재용 CCTV 설치	조건부 허 가